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변 호	2820
------------	------

2025. 6. 18.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5. 5. 26. 최기찬 의원 발의 (2025. 5. 29. 회부)

2.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명한 조합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 69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신설 (안 제52조제3항)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상위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조합운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 ② (생략) <u>&lt;신설&gt;</u>	제52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u>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제54조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을때,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1)</sup>.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 등)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변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데,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sup>2)</sup>.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감독 등)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5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부재함. 유사사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sup>3)</sup>할 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공 기능을 함께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2021년 9월~), 현재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81개소(붙임3) 중 162개소(57.7%)가 이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붙임2).
-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중인 사항을 조례상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로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부재함에 따라 해당 조합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바,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홈페이지 성능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유형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태훈	02-2180-8203

3)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기존에 개별 운영 중이던 3개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것임.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
시스템개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예산·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홈페이지주소	<a href="http://cleanup.seoul.go.kr">http://cleanup.seoul.go.kr</a>	<a href="http://cleanup.seoul.go.kr/sures">http://cleanup.seoul.go.kr/sures</a>	<a href="http://cleanbup.esoul.go.kr">http://cleanbup.esoul.go.kr</a>
근거법령	도정법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	도정법 제35조, 제1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 제80조	도정법 제1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
시스템개시	2010.01. (2016.07. 3차 고도화)	2010.03. (2013.05. 재개발)	2017.12.

\* 출처: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주거정비과-3871, 2020.3.5.)

[붙임1] 관계법령 (p.5)

[붙임2]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등록 조합 현황\_가로주택정비사업 (p.9)

[붙임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조합원 수 (p.1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
-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54조(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3.>

⑥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⑦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2022. 2. 3.>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1의2.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4. 제5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21.9.30.>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조합업무지원 :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지원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정보공개 등의 작성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⑥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9.30.>

**붙임2**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등록 조합 현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출처: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제출자료

연번	자치구	사업명	위치	사업 단계
<b>소규모재건축사업(29개소)</b>				
1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고덕동 470	조합설립인가
2	강동구	길동한전우성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길동 332	조합설립인가
3	강북구	보광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수유동 360-1	사업시행인가
4	강북구	삼흥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유동 486-2	사업시행인가
5	강서구	대근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화곡동 73-105	조합설립인가
6	강서구	보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화곡동 359-124	조합설립인가
7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광장동 561	조합설립인가
8	구로구	한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고척동 227-1	조합설립인가
9	구로구	동양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궁동 171-1	조합설립인가
10	구로구	월드빌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궁동 236-1	조합설립인가
11	구로구	미래빌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오류동 68-21	조합설립인가
12	구로구	길훈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오류동 150-42	조합설립인가
13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시흥동 983-13	조합설립인가
14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	시흥동 1004	사업시행인가
15	노원구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공릉동 270-71	착공
16	도봉구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창동 466	사업시행인가
17	동작구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본동 148-2	조합설립인가
18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사당동 196	조합설립인가
19	동작구	대광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상도동 211-447	사업시행인가
20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공덕동 370-9	조합설립인가
21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홍제동 90-6	조합설립인가
22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정릉동 670-24	조합설립인가
23	성북구	이화연립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정릉동 895	조합설립인가
24	성북구	동신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하월곡동 70-4	사업시행인가
25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락동 161-3	착공
26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풍납동 147-1	조합설립인가
27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산동4가 92	사업시행인가
28	은평구	성락타운아파트소규모재건축사업	신사동 261-20	조합설립인가
29	종량구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묵동 188-1	조합설립인가
<b>가로주택정비사업(133개소)</b>				
31	강동구	성내동 28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성내동 288-1	조합설립인가
32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암사동 495-0	조합설립인가
33	강동구	천호동 107-33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천호동 107-33	조합설립인가
34	강동구	천호동 22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천호동 221	조합설립인가
35	강동구	천호동 225-1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천호동 225-16	조합설립인가
36	강동구	천호동 337-3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천호동 337-30	조합설립인가
37	강동구	천호동145-6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동구 천호동 145-66	조합설립인가
38	강동구	현대하이츠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동구 명일동 263-2	착공
39	강북구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강북구 미아동 833-2	조합설립인가
40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북구 미아동 90-45	조합설립인가
41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북구 미아동 767-51	조합설립인가
42	강북구	번동 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강북구 번동 430-27	사업시행인가
43	강북구	번동 4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강북구 번동 428-4	사업시행인가
44	강북구	번동 5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강북구 번동 427-63	사업시행인가
45	강북구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북구 번동 471-118	조합설립인가
46	강북구	번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북구 번동 429-114	사업시행인가

연번	자치구	사업명	위치	사업 단계
47	강북구	번동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강북구 번동 454-61	조합설립인가
48	강북구	번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북구 번동 429-97	사업시행인가
49	강북구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강북구 번동 413-44	조합설립인가
50	강북구	번동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북구 번동 443-46	조합설립인가
51	강북구	번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북구 번동 458-2	조합설립인가
52	강서구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강서구 등촌동 515-44	조합설립인가
53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서구 방화동 247-71	조합설립인가
54	강서구	방화동 286-1 한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서구 방화동 286-1	조합설립인가
55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서구 방화동 598-146	조합설립인가
56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서구 방화동 584-1	사업시행인가
57	강서구	양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서구 염창동 253-1	조합설립인가
58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강서구 화곡동 1130-7	조합설립인가
59	관악구	봉천동 153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1535-37	조합설립인가
60	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악구 신림동 655-78	조합설립인가
61	광진구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진구 자양동 249-2	조합설립인가
62	광진구	자양변영로3나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진구 자양동 588-22	조합설립인가
63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진구 구의동 592-39	사업시행인가
64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진구 화양동 32-12	조합설립인가
65	구로구	고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홍진은성우정연립)	구로구 고척동 241-2	조합설립인가
66	구로구	고척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구 고척동 241-63	조합설립인가
67	구로구	고척동 241-33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구 고척동 241-337	조합설립인가
68	구로구	고척동241-1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로구 고척동 241-11	조합설립인가
69	구로구	공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구로구 공동 240	조합설립인가
70	구로구	진주빌라	구로구 개봉동 298-33	조합설립인가
71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919-0	조합설립인가
72	금천구	시흥동 81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금천구 시흥동 817818169	조합설립인가
73	금천구	시흥동 92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920-13	조합설립인가
74	금천구	시흥동 923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923	조합설립인가
75	금천구	시흥동 9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933	조합설립인가
76	금천구	시흥동 93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934	조합설립인가
77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노원구 상계동 322-8	조합설립인가
78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도봉구 도봉동 625-80	조합설립인가
79	도봉구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도봉구 방학동 343-0	사업시행인가
80	도봉구	신창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도봉구 창동 581-3	조합설립인가
81	도봉구	창동 501-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도봉구 창동 501-13	조합설립인가
82	동대문구	장안동 32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동대문구 장안동 326	조합설립인가
83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조합설립인가
84	동작구	사당동 192번지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동작구 사당동 192-1	조합설립인가
85	동작구	사당동 206대시 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206-1	조합설립인가
86	마포구	망원동 454-3 가로주택정비사업(신탁사업시행자방식)	마포구 망원동 454-3	조합설립인가
87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마포구 망원동 456-2	조합설립인가
88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마포구 망원동 459-1	조합설립인가
89	마포구	성산동 165-72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마포구 성산동 165-72	조합설립인가
90	마포구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마포구 합정동 447	사업시행인가
91	서대문구	홍은동 326-2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326-2	조합설립인가
92	서대문구	홍은동11-36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조합설립인가
93	서대문구	홍은동277-20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277-200	사업시행인가
94	서대문구	홍은동322-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사업시행인가
95	서대문구	홍은동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355-0	사업시행인가
96	서대문구	홍제동266-23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조합설립인가
97	서초구	방배대우가로주택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562-1	조합설립인가
98	서초구	방배동 도구머리공원 방배빌라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980-36	조합설립인가

연번	자치구	사업명	위치	사업 단계
99	성북구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안암동3가 54-0	조합설립인가
100	성북구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석관동 261-98	조합설립인가
101	성북구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석관동 334-69	조합설립인가
102	성북구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석관동 332-113	조합설립인가
103	성북구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석관동 332-46	조합설립인가
104	성북구	석관1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석관동 332-179	조합설립인가
105	성북구	석관2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석관동 332-366	조합설립인가
106	성북구	성북동300-5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성북동 300-5	조합설립인가
107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장위동 68-435	조합설립인가
108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장위동 68-833	조합설립인가
109	성북구	장위1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장위동 65-107	조합설립인가
110	성북구	장위1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장위동 66-146	조합설립인가
111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장위동 219-133	조합설립인가
112	성북구	장위13-6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장위동 232-41	조합설립인가
113	성북구	장위1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장위동 219-114	조합설립인가
114	성북구	장위13의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장위동 232-125	조합설립인가
115	성북구	정릉동 218의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정릉동 218-1	조합설립인가
116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정릉로27길 123(금강빌라)	조합설립인가
117	성북구	정릉동 38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성북구 정릉동 385-1	조합설립인가
118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정릉동 545-12	조합설립인가
119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정릉동 545-12	조합설립인가
120	성북구	종암동 1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북구 종암동 112-37	조합설립인가
121	성북구	종암동 3-745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종암동 3-745	조합설립인가
122	성북구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종암동 81-188	조합설립인가
123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조합설립인가
124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조합설립인가
125	송파구	오금동143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동 143-1	사업시행인가
126	송파구	오금동147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동 147-0	사업시행인가
127	송파구	오금동35-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동 35-1	조합설립인가
128	송파구	풍납동 성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파구 풍납동 406-0	착공
129	양천구	신월1동 144-2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1동 144-20	조합설립인가
130	영등포구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영등포구 대림동 786	조합설립인가
131	영등포구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 신길동 4377	사업시행인가
132	영등포구	양평유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0	사업시행인가
133	용산구	서계동11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용산구 서계동 116	조합설립인가
134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용산구 신창동 76-1	조합설립인가
135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산구 한남동 29-4	조합설립인가
136	은평구	갈현동 이화연립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은평구 갈현동 259-7	조합설립인가
137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은평구 대조동 92-5	조합설립인가
138	종로구	송인동 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종로구 송인동 61-103	조합설립인가
139	중랑구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1동 1-1	사업시행인가
140	중랑구	망우동 509의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망우동 509-1	조합설립인가
141	중랑구	면목동 1-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4	조합설립인가
142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망우동 427-5	조합설립인가
143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94	사업시행인가
144	중랑구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06-5	조합설립인가
145	중랑구	면목본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07-33	조합설립인가
146	중랑구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09-18	조합설립인가
147	중랑구	면목역 3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면목동 152-1	조합설립인가
148	중랑구	면목역 3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면목동 153-51	조합설립인가
149	중랑구	면목역 3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면목동 154-31	조합설립인가
150	중랑구	면목역 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63-28	조합설립인가

연번	자치구	사업명	위치	사업 단계
151	중랑구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239-1	조합설립인가
152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251-4	조합설립인가
153	중랑구	면목역2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39-52	조합설립인가
154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99-41	조합설립인가
155	중랑구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86-19	조합설립인가
156	중랑구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상봉동 304-4	조합설립인가
157	중랑구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동 215-6	조합설립인가
158	중랑구	세광하니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중화동 296-44	사업시행인가
159	중랑구	중화역 2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동 329-38	조합설립인가
160	중랑구	중화역 2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동 329-58	조합설립인가
161	중랑구	중화역 2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동 327-49	조합설립인가
162	중랑구	중화역 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동 317-45	조합설립인가

**붙임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조합설립~ 착공 단계) 및 조합원 수**

\*출처: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제출자료

구 분	사업장수	조합원수	비 고
계	281		
가로주택정비사업	53	50명 이하	
	82	50명 초과 ~ 100명 이하	
	54	100명 초과 ~200명 이하	
	17	200명 초과 ~300명 이하	
	3	300명 초과	
소규모재건축	24	50명 이하	
	25	50명 초과 ~ 100명 이하	
	21	100명 초과 ~ 200명 이하	
소규모재개발	2	50명 이하	